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정치*

김범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본 연구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조선인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2000년대 이후 국내로 ‘귀환’하여 ‘역 디아스포라(reverse diaspora)’를 형성하는 과정을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81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20일까지 ‘고려인’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 기사를 자료로 활용하여 198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를 살펴본 후 이어 2000년대와 2010년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중앙아시아 출신국을 ‘고향’으로 그리워하며 ‘역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고향’의 의미가 이주와 재이주 과정 속에 계속 변화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주제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귀환 이주, 역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정치, 정체성

I. 서론

구한말과 일본 식민지 시기 새로운 경작지와 일자리를 찾아 연해주에 정착했으나 1937년 스탈린(Stalin)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 간 조선인의 후손인 ‘고려인’¹의 국내 ‘귀환’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² 특히 2007

*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1407).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¹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 간 조선인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이 지역 출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재소한인’, ‘고려인’, ‘고려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 가운데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주로 옛 소련 지역에 사는 우리 겨레”를 지칭하는 용어로 등재되어 있고(국립국어원, 2019), 현재 우리나라 언론 기사는 물론 학술 논문 등에도 일반적으로 사

년 법무부가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문 취업제’를 실시함에 따라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하는 고려인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 수는 대략 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법무부 2019). 본 논문은 이처럼 2000년대 이후 국내로 ‘귀환(return)’한 고려인 가운데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조국’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역 디아스포라(reverse diaspora)’를 형성하는 과정을 디아스포라 정치(diaspora politics)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상세 검색에서 검색어를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소련 중앙아시아 한인’으로, 언론사

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하에서는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인용표시(‘ ’)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²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 3세와 4세의 국내 이주를 ‘귀환(return)’ 또는 ‘귀환 이주(remigration)’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은 수세대에 걸쳐 외국에 거주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Safran, 2005), 몇 세대에 걸쳐 소련에 거주하다가 소련 붕괴 이후 독일로 돌아온 독일인(Hess, 2008), 노예 후손으로 미국에 거주하다 아프리카로 이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Fehler, 2011),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민 간 일본인의 후손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니케이진(Tsuda, 2003), 일본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3세, 4세 후손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이주한 재일한인(권숙인, 2008) 등의 사례를 넓은 의미에서 ‘고향’을 찾아 되돌아가는 ‘귀환 이주’ 또는 ‘조상을 찾아 되돌아가는 이주(ancestral migration)’로 설명하는(King and Christou, 2011)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국내 이주 또한 이러한 귀환 이주의 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³ ‘씨앗을 흩뿌리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διασπείρω(diaspeirō)에서 유래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 시기 정복 식민지 개척을 위해 본국을 떠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이 용어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Wikipedia, 2019).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디아스포라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강제로 고향에서 쫓겨난 유대인 사례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등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을 떠난 종족 집단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Cohen, 2008). 이하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처럼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적으로 존재하는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지속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및 ‘배제와 포용의 정치(the politics of exclusion and inclusion)’를 포괄적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등 4개 신문을 대상으로, 검색 유형은 '기사'로, 검색 기간은 1981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여 각각 223건과 279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상세 검색에서 검색 조건은 '고려인'과 더불어 '민족', '조국', '동포', '정체성', '고향', '차별'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검색 범위는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20일까지로,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을 포함하는 11개 중앙지와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등을 포함하는 28개 지역종합지로 제한하여 약 1만여 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이들 기사 가운데 중앙아시아 고려인과의 인터뷰를 포함하는 기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직접 기고한 칼럼 또는 기고문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다.

이러한 신문 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논문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에 초점을 맞춰 이주와 재이주, '귀환'의 경험 속에서 '조국'과 '고향', 정체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⁴ 우선 II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 및 '귀환'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며 III장에서는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소련의 개혁·개방과 1990년 한·소 국교 정상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15개 공화국으로의 분리·독립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IV장에서는

⁴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신문에 기사화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특히 기획 기사의 경우 기획 의도에 따라, 예를 들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고려인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한국 사회의 배타주의와 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정도 과장되거나 편향되게 기사화된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을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표본 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또는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하나 지면의 제약으로 본 논문은 우선 신문 기사에 표상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 변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표상해 왔는지,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외동포법 시행(1999)과 방문취업제 도입(2007) 이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중앙아시아 출신국을 ‘진정한 고향(true homeland)’으로 그리워하며 새로운 디아스포라, 즉 ‘고향’과 ‘타향’이 뒤바뀐 ‘역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국제적 인구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또는 조상의 고향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종족집단(ethnic groups)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Brubaker, 2005: 1). 실제로 디아스포라에 관한 주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라는 제목의 학술지가 1991년 처음 창간되었고 이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정치학은 물론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디아스포라에 관한 논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헨(Cohen, 2008: xv)에 의하면 미국 국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 ‘diaspora’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1990년대 중반에는 수백 건의 자료만 검색되었으나 2007년에는 2,500여 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 7월 필자가 검색한 결과는 책과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6,4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https://www.loc.gov>). 이뿐만 아니라 구글스칼라(<https://scholar.google.com>) 검색 결과도 2007년 8월 기준 8만 1,900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나(Cohen, 2008: xv), 2019년 7월 필자가 검색한 결과는 86만 7,000건에 달할 정도로 지난 10여 년 사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⁵ 헤스(Hess, 2008)는 수 세기에 걸쳐 러시아에 거주하다 소련 붕괴 이후 독일과 그리스로 ‘귀환’한 독일인과 그리스인 사례를 중심으로 ‘고향’으로의 ‘귀환’이 디아스포라 해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조상의 나라에서 ‘고향’과 ‘타향’이 뒤바뀐 새로운 디아스포라, 즉 ‘역 디아스포라(reverse diaspora)’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우티라(Voutira, 2006)는 소련 붕괴 이후 그리스로 ‘귀환’한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자신들만의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를 구성하고 ‘역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 외에 헤드버그(Hedberg, 2009), 폭스(Fox, 2009), 타케나카(Takenaka, 2009), 송창주(Song, 2009) 등의 연구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귀환’ 이후 ‘고향’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 또한 이러한 연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 ‘귀환’ 이후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디아스포라 개념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헨(Cohen, 2008: 4-7)이 언급한 디아스포라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디아스포라의 원형(prototype)으로 가정하고 '고향'을 디아스포라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목적론적 이상향으로 설명한다. 실례로 디아스포라에 관한 대표적 연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샤프란의 연구는 '고향 지향성(homeland orientation)'을 디아스포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한다. 샤프란에 의하면 디아스포라는 1) 자신 또는 조상들이 특정 중심지(center)를 떠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주변(peripheral) 지역 또는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고, 2) 그러면서도 원래 고향(original homeland)의 물리적 위치와 역사, 성취 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비전, 신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3) 자신들이 살고 있는 타향 땅(host society)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4) 조상의 고향(ancestral homeland)을 자신 또는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또는 돌아가야 할 진정한 이상향의 고향(true and ideal home)으로 간주하고, 5) 자신들의 원래 고향의 보존과 유지 및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며, 6)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의 고향과 연계를 계속 이어가고 이러한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종족공동체 의식과 연대를 규정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서 2), 4), 5), 6)은 '고향'과의 연계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정의하고 있다(Safran, 1991: 83-84). 이 외에 디아스포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가 디아스포라의 '가치와 정체성, 충성심의 원천'으로 '고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Brubaker, 2005: 5).

이처럼 디아스포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목적론적 이상향으로 '고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향'으로의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Hess, 2008: 290). 물론 일부 연구들이 소련 붕괴 이후 소련에서 독일로 '귀환'한 독일인 사례(Hess, 2008; Orloff and Frey, 2007)와 그리스로 '귀환'한 그리스인 사례(Voutira, 2006), 카자흐스탄에서 폴란드로 '귀환'한 폴란드인 사례(Iglicka, 1998), 남아메리카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니케이진 사례(Orloff and Frey, 2007; Tsuda, 2003) 등 다양한 귀환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양과 깊이에서 디아스포라의 '귀환' 이후, 특히 이후 이

후 몇 세대가 지난 3세, 4세들의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한 연구는 디아스포라 연구 일반과 비교할 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Conway and Potter, 2016: xvi).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 3세, 4세가 선조들의 ‘고향’으로 ‘귀환’한 이후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출신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그리워하며 새로운 디아스포라, 즉 ‘역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과정을 디아스포라 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주 및 ‘귀환’

조선인들이 언제 처음 연해주로 이주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1863년 9월 21일 자 연해주의 노보고로드스키(Новгородский) 국경감시소 책임자가 연해주 군 총독에게 보낸 “한인 13가구가 빈곤과 굶주림 및 착취를 피하여 비밀리에 남-우수리스크(Южно-Уссурийск) 포시에트(Посьёт) 지역의 지신허(地新墟)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최초 기록이다(이원용, 2011: 150-151). 이렇게 시작한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는 19세기 후반을 거치며 계속 증가했고 일본의 조선 병합 이후 본격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으로 경작권을 상실한 농민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운 경작지와 일자리를 찾아 연해주로 이주함에 따라 연해주 재류 조선인 수는 1910년 약 5만 5,000명에서 1925년 약 12만 명, 1937년 약 18만 명으로 증가했다(Yoon, 2012: 416, 419).

이처럼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1937년 8월 21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이 지역 거주 조선인 중 일부가 일본의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조선인에게 1938년 1월 1일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했다(이원봉, 2001: 85-87). 이에 당시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약 18만 명의 조선인은 1937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다(이원용, 2011: 189-190). 자료에 의하면 이동 중 상당수 조선인들이 추위와 배고픔, 질병 등으로 사망하고 최종적으로 우즈베크공화국에 1만 6,272가구 7만 6,525명, 카자흐공화국에 2만

170가구 9만 5,256명이 도착했다(이광규, 1998: 72).

중앙아시아 지역에 도착한 이 조선인들은 정착 초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점차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의 조선인 콜호즈(집단농장)는 농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지역을 옥토로 만들고 벼농사를 성공시켜 소련 전역에 쌀을 보급했다(『경향신문』, “한인이 소에 벼농사 전수”, 1988. 8. 4.; 『한겨레』, “폴리토겔 콜호스의 기적 불모지 5천만 평 옥토로”, 1996. 1. 1.). 이러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1956년 7월 소련 당국이 소수 민족의 공민권 회복 조치와 ‘특별이주민들의 거주제한 조치 해제법’을 실시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조선인들과 그 후손인 고려인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대도시로의 이주도 가능해지는 등 일상 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이원봉, 2001: 95-99).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며 고려인들은 소련에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과학, 교육, 기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명드미트리, 2007: 199-200).

그러나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하고 소비에트연방이 15개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출범하면서 고려인의 운명은 또 다른 분기점을 맞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전의 거주지로 귀환할 권리와 러시아로 이주할 경우 국적을 회복하거나 획득할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새로 소비에트연방에서 분리 독립한 공화국들이 공용어를 러시아어에서 자국어로 전환하고 콜호즈의 대표나 관리를 자국민으로 교체하는 등 자국민 중심의 언어, 종교, 경제, 교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고려인을 또 다른 ‘유민의 길’로 내몰았다(신명직, 2014: 90). 이 결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고려인의 상당수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를 벗어나 러시아로 재이주하거나 연해주로 ‘귀환’했다. 또한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과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 상당수가 사실상 ‘전쟁 난민’이 되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으로 쫓겨났다. 실례로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던 약 1만여 명의 고려인들은 타지키스탄 독립 직후 벌어진 내전(1992-1997)을 피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

탄 등지로 재이주했다(이재문·박규택, 2003: 562-563; 전신옥, 2007: 83-87).

이러한 이주와 재이주를 거쳐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흩어져 거주하던 고려인의 국내 ‘귀환’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대를 위해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 3일부터 시행했다(국회 통과는 1999년 8월 12일). 특히 이 법은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간 체류할 수 있고(2009년 6월 20일 6차 개정을 통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며,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제10조 제5호).

그러나 동 법률 제2조 제2호는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 중국 조선족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기회가 없었던 동포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이에 1999년 8월 23일 조연섭 씨(당시 75세) 등 조선족 동포 3명은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러시아 등지의 재외동포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동아일보』, “재외동포법 적용제외 조선족 3명 헌소 제기”, 1999. 8. 24). 약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 494).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 동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⁶

⁶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1호와 제2호는 외국국적 동포를 각각 “출생

이후 정부는 재외동포법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고려인과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2007년 ‘방문취업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법무부는 만 2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5년 유효, 1회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7: 10). 또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동포들이 작물 재배업, 축산업, 어업, 소금 채취업, 제조업(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건설업, 산동물 도매업, 운송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여관업, 음식점업,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욕탕업, 산업용 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총 38개 업종에서 국내 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전용일 외, 2017: 60-64).⁷

이러한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하는 고려인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 1에 의하면 2018년 말 현재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F-4 비자 또는 방문취업자에게 부여되는 H-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을 각각 1세와 2세, 3세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4세 이후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재외동포비자(F-4) 또는 방문취업비자(H-2)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대다수 재외동포 4세들은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의 동거인에게 발급되는 방문동거비자(F-1)를 발급받거나 또는 2014년 신설한 동포단기방문비자(C-3-8)를 발급받아야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문동거비자의 경우 성인이 되는 만 19세부터는 동거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국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동포단기방문비자의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후 3개월에 한 번씩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4세 이후 재외동포도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고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b).

⁷ 정부가 이처럼 방문취업제 도입을 통해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자유왕래와 국내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사증발급총량제’를 통해 매년 입국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연간 총 인원은 30만 3,0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전용일 외, 2017: 65-66).

표 1 CIS 출신 외국인 체류자격별 체류자 수 2014~2018

국적	2014		2015		2016		2017		2018	
	F-4	H-2	F-4	H-2	F-4	H-2	F-4	H-2	F-4	H-2
러시아	4,650	332	7,935	105	14,932	41	20,489	22	24,115	17
몰도바	0	0	0	0	0	0	0	0	0	0
벨로루시	1	0	2	0	6	0	15	0	19	0
아르메니아	1	0	1	0	1	0	1	0	1	0
아제르바이잔	2	0	2	0	4	0	5	0	4	0
우즈베키스탄	4,631	12,386	5,512	14,106	7,201	16,955	8,959	18,641	10,547	19,693
우크라이나	45	314	65	659	124	1,086	187	1,375	267	1,643
카자흐스탄	782	1,054	871	1,509	1,852	3,030	3,215	5,032	4,364	6,696
키르기스스탄	188	551	368	743	567	1,146	637	1,455	859	1,536
타지키스탄	11	67	15	63	24	93	31	128	65	145
투르크메니스탄	2	1	2	1	7	0	30	1	91	43
계	10,313	14,705	14,773	17,186	24,718	22,351	33,569	26,654	40,332	29,773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자료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체류하는 고려인은 약 7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고려인은 러시아 국적자(2만 4,115명)가 가장 많고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체류하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1만 9,693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범주를 모두 합할 경우 우즈베키스탄(3만 240명), 러시아(2만 4,132명), 카자흐스탄(1만 1,06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고려인뿐 아니라 우즈베크 민족 또한 상당수가 외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오정은·김경미·송석원, 2015: 11-12).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러시아 출신 고려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재외동포 자격(F-4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의 경우 다수가 방문취업자(H-2 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주원인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

가 출신 고려인들이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부 방침으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이에 국내에 체류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⁹ 반면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대부분이 최장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은 최장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체류 자격은 안정적이나 재외동포 비자가 단순노무 업종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F-4 비자를 발급받을 때 이들은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한다)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차이는 아래 표 2 참조).

이처럼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과 러시아 출신 고려인들의 국내 '귀환' 이후 경험은 같은 고려인임에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체류 자격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며(방문취업의 경우 4년 10개월, 재외동포의 경우 무제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 또한 다르다(방문취업의 경우 단순노무 가능, 재외동포의 경우 단순노무 불가능). 이와 더불어 러시아 출신 고려인 가운데 일부는 일본 식민지 시기 강제 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해방 이후 사할린에 정착한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이들의 이주 배경 및 집단의 성격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⁸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불법체류다발국가 21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희박한 고학력자, 전문인력, 법인기업체 대표, 만 60세 이상의 동포 등에게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고 있다(전용일 외, 2017: 54-58).

⁹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방문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가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증(건설업 제외)을 취득할 경우 재외동포(F-4)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방문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재외동포(F-4)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법제처, 2019).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입국 이후 자격증 취득 등의 방법으로 재외동포로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표 2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차이

구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부여대상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불법체류다발국가 21개국(중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포함) 국적을 보유한 동포	방문취업 대상 이외의 국가 출신 동포와 방문취업 대상 국가 출신자의 경우에도 고학력자, 전문인력, 법인기업체 대표, 또는 만 60세 이상인 동포
최장 체류기간	4년 10개월	제한 없음
취업기간 연장	3년 + 1년 10개월 (취업 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2개월 후 재입국 가능)	3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출국 필요 없이 계속 체류 가능)
취업가능 업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요식업, 서비스업, 소규모 제조업 등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38개 업종 (주로 저임금 3D 업종)	단순노무직, 공공복리 등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
단순노무	가능	불가능
체류인원 제한	2017년 기준 연간 30만 3,000명	체류인원 제한 없음

출처: 전용일 외 3인(2017) 54쪽과 66쪽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조선인의 후손인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고려인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 즉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과 러시아 출신 고려인, 그리고 사할린 출신 고려인 사이에 나타나는 이주 배경과 체류 자격상의 차이, 국내 ‘귀환’ 이후 경험의 차이로 인해 이들 고려인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¹⁰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고려인 가운데 주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 이주, 재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조국’으로의 ‘귀환’ 과정을 거치며 이들의 ‘조국’과 ‘고향’,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¹⁰ 고려인 내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III.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분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스탈린 집권 시기(1924~1953)는 물론이고 이후 흐루쇼프(Khrushchev, 1953~1964)와 브레즈네프 집권 시기(Brezhnev, 1964~1982)를 거치며 계속된 소련 중앙정부의 소비에트화(sovietization) 정책과 소수민족 억압 정책하에서 자신들의 독자적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소련 사회에 동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실제로 강제이주 이후 소련 중앙정부가 민족학교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고려인들은 조선어 대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배웠고 사상적 측면은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도 소련 내 어느 소수민족보다도 철저하게 '소비에트 인민'이 되고자 노력했다(최환우, 2000: 209-210).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 도입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자신을 '조선인'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인민'으로 인식했고 소련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1989년 현지 취재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동아일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인들은 소련의 개혁개방 이전 과거 자신들에게 '조국'은 소련을 의미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동아일보』, “소련 속의 고려인을 찾아서(19): 한민족 뿌리찾기 운동 활발”, 1989. 11. 3).

고려인들의 시집에는 이렇듯 「조국」 「고향」 「어머니의 품」 등의 제하에 한국적 풍토와 서정을 노래한 시들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그린 조국 고향은 이미 「조선」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한글로 글을 쓰는 고려인 작가 중 한사람인 연승룡 씨(80 알마아타시)를 만났을 때였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기자가 묻자 “물론 소련”이라고 우습다는 듯 대답했다. “그러면 조선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다시 묻자 “부모님의 나라”라고 잘라 말했다. 조선극장에서 약 50년간 연출가와 극작가로 일했던 연(燕)웅의 의식이 이렇진대 한국어조차 잃어버린 다른 고려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형편이었다. 알마아타시 건설관계위원회 당 서기인 겐나디 하일로비치 씨(40).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서류에 「소비에트 조선인」이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이는 다민족국가에서 인종적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일 뿐 민족의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선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

어나고 자라서 이곳 문화에 흠뻑 젖어있습니다.”¹¹

동일한 맥락에서 소련 과학원 교수 유 게라심 안드레이비치 박사는 “소(蘇) 동화에 애쓰다 민족 문화 잃어”라는 제목으로 1989년 11월 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민족의식을 잃고 살았던 고려인들의 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유 언어와 문화를 잃고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 더욱이 조선 사람들은 소련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 자신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이 스탈린의 탄압정책과 조선인 스스로의 소홀로 소멸되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련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민족의식을 잃고 살아오던 고려인들은 고르바초프(Gorbachev) 등장 이후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억압 정책이 완화되면서 서서히 민족의식에 다시 눈뜨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와 1990년 9월 30일 한소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는 고려인들이 늘기 시작했다. “소련 속의 한인들(1): ‘우린 고려인’ 민족혼 면면히”라는 제목의 1989년 5월 11일 자 『경향신문』 기획기사는 이 시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 새롭게 싹트기 시작한 민족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련의 한인사회가 이주 1세기 만에 처음으로 소련에서의 한인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바야흐로 「민족적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 서울올림픽 성공은 이들 재소 동포에게 잠자던 조국애를 흔들어 깨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어느 한인 거주 지역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침이 마르도록 올림픽 성공을 칭송했고 이로써 자신들이 한국인으로 되살아났음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¹¹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신문기사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원문의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수정했으며 띄어쓰기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수정했다. 반면 철자법의 경우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없으면 원문에 나온 철자대로 인용했다. 강조와 중략 표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필자가 강조하고 생략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시기 고려인들 사이에 되살아나기 시작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을 방문한 고려인들의 언론 기고문, 인터뷰 등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조국이 내 영혼 속에 용해”라는 제목으로 1989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당시 “한민족체육대회 참가차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재소 동포학자 [2세인] 한(韓) 마르크스 박사(63, 모스크바고급청년대 역사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거리에서, 공원에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인민들을 보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민족주의적 동포애를 느꼈다. 먼 이국땅에서 태어나고 자라 귀밀머리가 이미 허영계 센 나로서는 남조선이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다. ... 나는 지금부터 제2의 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남조선 인민과 일꾼들의 친절에 감사한다. 조국은 여전히 내 곁에, 내 안에 살아있다.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자처한 내가 오늘 남조선을 떠나면서 외로워지고 있다. 조국은 내 영혼과 같은 것이며 나는 오늘 조국을 떠나며 비로소 영혼의 회귀함과 평화로움을 느낀다.

비슷한 맥락에서 1939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로 소련의 유명 작가인 아나톨리 김은 “재소한인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1990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에 투고한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조국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이 러시아 땅에는 자신의 민족적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상실한 채 러시아 여인들 혹은 머리가 까만 지방민의 아내와 결혼해서 모든 동포와 절연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한인들도 있지 않은가. 한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그렇게 외로운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 이들을 과연 한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자부하고 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건, 우리에게 그 어떤 손실이 오건, 그 어디메에 우리가 살건, 설사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 살지언정 한국인은 언제나 한국인으로 남아 있는 법.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마주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선조의 머나먼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영원히 불변하리라.

또한 이 시기 다수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현지를 방문 취재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을 ‘한민족’ 또는 ‘한국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고향’ 또는 ‘조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실례로 “우리 정서 인정 고스란히 간직 주섬일 특과원 카자흐공 한인사회를 가다”라는 제목으로 1993년 10월 7일 자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는 알마아타 중앙시장에서 김치와 나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1937년 스탈린 정권이 연해주 한인들을 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제2세대들이다. 필자와 대화를 나눈 할머니는 5세 때 부모를 따라 실려온 경우였다. 「동래 정씨이며 내 고향을 한국」이라고 말한 이 할머니는 그러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향이라 때때로 꿈만 꾸다」고 했다.

이처럼 1990년 한소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소련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고려인 1세와 2세를 중심으로 ‘한민족’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발견’한 경우도 있었지만 1991년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1990년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는 심각한 민족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에트 시절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대다수가 자신들을 ‘조선인’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에트 인민’으로 인식하고자 했고 소련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이 공용어를 러시아어에서 자국어로 전환하고 자국민 중심의 언어, 종교, 경제, 교육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전까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스스로를 ‘소비에트 인민’으로 인식해 왔던 고려인들은 신생독립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를 자신의 ‘조국’으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러시아인 동포(Россий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로 인식하기도 했고(황영삼, 2016: 169), 또 다른 일부는 레이틴(Laitin, 1998: 263-32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민족과 종족(ethnicity) 경계를 뛰어넘어 러시아어를 매개로 ‘러시아어 사용 주민(Russian-speaking populations)’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

차 정치·사회적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특히 고려인 3세와 4세를 중심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중앙아시아 국가를 자신들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 또한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례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 최 라디온 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6.25 50주년 특별기획(2): 카레이스키 재망명의 길”, 2000. 6. 2).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던 1세대는 따라서 조국이라는 개념도 비교적 분명하다. 구소련에서 태어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이지만 마음속 자신들의 조국은 아직도 한반도라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2세대와 3세대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에게 조국은 우즈베키스탄이다. 고려인 최 라디온(32) 씨는 “특히 20대 전후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 한국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조국을 물으면 주저 없이 모두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고려인들이 “주저 없이” 스스로를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고려인들은 최근까지도 민족 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우즈베크 고려인들은 지금 민족차별에 울고 ... 고국은 멀고”라는 제목으로 2006년 9월 27일 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고려인 3세와 4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 젊은 세대, 정체성 혼돈 = 니자미 사범대학 한국어과 1학년 강 디미트리히(19)군은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우즈베크인도 아닌 고려인”이라고 말했다. 타슈켄트에서 컴퓨터 강사로 일하는 도 샤샤(39) 씨는 “우리 고려인들은 우즈베크 사람들로 부터도 차별받고, 한국인들로부터도 차별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어 강사가 꿈인 최 빅토리아(21·여) 양 역시 “우리 고려인들은 우즈베크이나 러시아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지만 스스로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중앙아시아에 빈진 한류는 고려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일깨우지만 70년간 우즈베크에 뿌리내린 그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아직 멀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목놓아 울다 ④: 카레이스키 유랑의 땅 -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9월 29일 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도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고려인 3세와 4세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문제는 언어다. 조선족과 달리 고려인 청장년층은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생존을 위해 익힌 러시아어 실력은 뛰어나지만 한국말 구사력은 극히 미약하다. 심지어 우즈베크어도 잘 모른다. 역사적 환경 탓에 ‘러시아 중심주의’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음식과 관혼상제 등 기타 풍습은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을 상실한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현지에서 대화를 나눴던 가장 젊은 고려인인 전 빅토르 아나톨리비치(25)의 말이 아직도 기자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는 “우리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생긴 건 한국인인데 국적은 우즈베크, 모국은 러시아다.’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젊은 고려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려인 3세와 4세의 정체성 갈등과 관련하여 “강제이주 70년 고려인을 찾아서(상): 젊은층에 부는 ‘한류바람’”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 1월 1일 자 『세계일보』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에 다니는 50명의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 고려인들은 대부분 강제이주 3, 4세대로 한국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본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 한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란 사실상 러시아 사람이다.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는 점만 빼면 한국과 별다른 연관도 없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세종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재학생 등 총 5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4%(47명)가 “한국을 좋아한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한류 열풍과 한국인의 친근한 이미지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들 중 한국을 ‘모국’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됐다.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명)에 그쳤다. 반면 ‘한국인도 러시아인도 아닌 고려인’이라는 응답이 54%(27명)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는 답변도 40%(20명)나 됐다. ... 이들은 모두 한국에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한민족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삶의 터전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옛 소련,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 이후 우수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소련에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은 고려인들이 1980년대 중반의 페레스트로이카, 1990년 한소국교정상화,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출범 등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격변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소비에트 인민'에서 '한민족', '러시아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등으로 변화시켜 왔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위의 설문조사 결과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3세와 4세 고려인들에게 나타나는 민족 정체성 분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즉 일부 소수 고려인 3세, 4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수 고려인 3세, 4세들이 '한민족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고려인'으로 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사람' 등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는 가운데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조국'으로 '귀환'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여 자신의 출신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그리워하며 '역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IV. 국내 이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 디아스포라' 형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하는 고려인 수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으로 생각하고 찾아온 한국 땅에서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 “강패적 차별 일상적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 2월 28일 『한겨레』에 실린 박노자 씨의 칼럼은 국어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한국 사회의 차별에 실망하여 한국을 떠난 고려인 여성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식당이니, 이발소니 어디를 가도 나의 외국식 발음을 듣고 맨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온 동포냐?’는 것이죠. ‘고려인’이라고 대답하면, 그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거기에서는 어렵지. 사는 게 어려워서 왔구나’예요. 국어의 토씨 체계를 연구하러 왔다 하면 안 믿는 듯이 다들 실실 웃어 보이죠. 그들은 말로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부르지만, 각자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같은 인권을 가진 같은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로 귀국하면 인종차별을 일삼는 모스크바 경찰들에게 가끔 모욕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의 깡패적인 차별이, 여기의 일상적인 차별보다도 결코 무섭지 않아요!

이처럼 고려인에게 가해지는 일상의 차별은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과 함께 국내로 ‘귀환’하는 고려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은 중국의 조선족 동포와 달리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더더욱 사회적 편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국서도 이방인 ... 공동체로 희망을 키워요”라는 제목으로 2015년 1월 2일 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고려인 3세 이 아르카지(62) 씨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한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자신이 태어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들은 살구색 피부에 검은 머리를 가진 그를 반기지 않았다. 40대 후반, 뒤늦게 자신과 닮은 이들을 찾아 할아버지의 고향에 왔다. 희망은 금세 절망으로 바뀌었다. 믿었던 한국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철저히 외면했다. “1991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한국에 갈 생각을 했죠. 제가 살던 타슈켄트 인근에서 저를 반갑게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어떻게든 한국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도 다르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은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차별했어요. 저 ‘전주 이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방인이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언론인 김호준이 본 유라시아의 들꽃, 고려인의 파노라마 (하): 조국에 발들 딛고”라는 제목으로 2015년 9월 9일 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조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많은 유라시아 고려인들이 코리안 드림의 희망을 안고 한국을 찾는다. 고국의 따뜻한 품을 기대하며 온다. 그들은 한국이 '역사적 조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슴이 뛰고 설렌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다. 고려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각별한 모국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 고려인은 약간 우리말을 이해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될 뿐이다. 어떤 고려인은 “우리는 거기서도 남이고 한국에 와서도 남이다.”라고 한탄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이러한 일상의 차별뿐 아니라 대다수가 방문취업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38개 업종, 즉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요식업, 소규모 제조업 등 주로 저임금 3D 업종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15년 9월 9일 자 『서울신문』에 실린 위 김호준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2014년 실시한 고려인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¹²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 거주 고려인 가운데 약 67%는 '3D 업체에서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64.8%가 15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7.0%가 부품, 염색, 조립, 화학공장, 건설현장 등 3D 업체에서 단순노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64.8%가 월 150만 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월 평균임금은 100만~150만 원이 전체의 51.8%로 가장 많다. 다음이 150만~200만 원 26.3%, 100만 원 미만 13.0%였다. 상대적 고소득자인 250만~300만 원 이상은 3.0%에 불과하다. 고려인 취업자들은 한 달 생활비 50만~6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주국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다.

또한 “월룸·상하방서 월세살이 허덕 ... 코리안 드림 접고 태반이 다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23일 자 『광주일보』에 실린 기사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에 대해 다음과

¹² 신문 기사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 결과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임재완(2014) 교수팀이 재외동포재단의 의뢰로 2014년 국내 거주 486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이 전하고 있다.

광산구 월곡동 주변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대체로 하남공단과 소촌공단 등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며 한 달 평균 100만 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빈손으로 러시아 등을 떠난 이들은 대체로 3~4평 남짓한 원룸과 낡은 주택에 딸린 좁은 방을 빌려 겨우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30만~4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든 고려인 일부는 월곡동 고려인센터에 마련된 3개의 좁다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언어 장벽과 외국 국적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은 고려인의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¹³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용한 2013년 6월 23일 자 『광주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90년대 초반 옛 소련 붕괴 후 생활고와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코리아인 드림’을 좇아 한국으로 건너온 고려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어 장벽과 ‘외국 사람’이라는 편견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말도 서투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던 고려인들은 인근 중소기업과 건설 현장, 식당 등을 떠돌며 채 1년을 못 채우고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노동자가 1년을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던 퇴직금 제도도 고려인에게에는 불이익이 되고 있다. 퇴직금 지급을 꺼린 사업주들이 근무 1년을 앞두고 고려인을 해고하고 있고,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얻을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 습득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¹⁴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만

¹³ 오정은·김경미·최석원(2015, 102-103)이 재외동포재단의 의뢰로 2015년 국내 거주 1,125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70%가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한국어 수준에 대해 “조금 알아듣는 수준(43.0%)”이거나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26.2%)”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약 19.8%이며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는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1.0%에 불과했다. 이 조사 결과는 한국어에 어느 정도 능숙한 고려인 유학생과 1945년 이전 출생한 70대 이상 고령의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약 280여 명을 포함한 결과로 이들을 제외할 경우 대다수 고려인들이 한국에 처음 올 당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응답자의 약 39.9%가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¹⁴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동포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한 이 니콜라이(50) 씨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없는 까닭에 단기취업(H-2) 5년 체류비자가 만료되는 8월 다시 빈손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앓아도 병원 못가고 끙끙 … 고려인 마을 주민 80% ‘무보험’”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3월 22일 자 『전남일보』에 실린 기사는 고려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장벽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3세 손 에브게니 씨(35)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같은 피가 흐르는 동포지만 법 앞에서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변변치 못한 별이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행여 몸이라도 아파 일을 못 나가게 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돼, 치료는커녕 병을 참아가며 일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모두 그들이 ‘조국’으로 여기며 찾아온 한국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9월 광주에 머물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3세 손 에브게니(35) 씨의 죽음은 이 같은 고려인들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험난한 삶을 살아온 그의 가족들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하나둘 떠나왔고, 손씨 또한 지난해 6월 한국 땅을 밟았다. 2년 전 먼저 광주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와서 자리를 잡은 친동생 손 니콜라이(31) 씨의 도움으로 한 공장에도 취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8년 전부터 앓아온 고혈압과 심장·신장질환이 그를 괴롭혔다. … 손씨는 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공장에 나가 일을 했다. 얼마 뒤 다리가 심하게 붓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니 근무 중에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손씨를 보다 못한 공장 사장은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 체류 기간 90일이 넘어야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되는데 손씨는 이를 채우지 못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것.¹⁵

분야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한국에서 단순노무를 제외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법제처, 2019).

¹⁵ 재외동포법 제14조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액의 치료비를 마련코자 손씨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육체적으로 고된 일용직을 전전했고,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다. 형의 병을 알게 된 동생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조금 더 적은 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형에게 건네며 “고향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으라”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행 버스에 태웠다. 그러나 손씨는 이날 동생과 헤어진 직후 버스 안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동일한 맥락에서 “3대째 만에 모국 왔지만, 염색공장에서 3년 일하다 폐결핵으로…”라는 제목으로 2013년 9월 15일 자 『한겨레』에 실린 기사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다가 폐결핵으로 숨진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3세 김 발로자 씨의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김 발로자(55) 씨는 2010년 한국에 왔다. 3대의 가난을 아들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할아버지는 가난에 쫓겨 두만강 너머 러시아로 갔다. 영원할 것 같던 소련이 무너진 뒤 아버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려났다. …

할아버지의 나라는 김씨에게 방문취업(H2) 비자를 내줬다.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들을 위한 비자였다. 먼저 한국에 간 사람들은 타슈켄트에서보다 몇 배나 큰 돈을 번다고 들었다. 곧 대학에 갈 아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알음알음 소개로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가족염색 공장에 들어갔다. 자고 일하고, 자고 일하는 기숙사 생활이 이어졌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은 끝나지 않았다. 고려인들에겐 당연한 고정급인 4,860원의 시급을, 한국인들은 ‘최저임금’이라고 불렀다. 한국말이 서툰 김씨는 ‘최저임금’이 한국인 사장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이라는 것을 눈치로 알았다.

화학 염료로 가득 찬 공단의 악취는 지독했다. 오래전 앓았던 폐결핵이 도진 것은 이듬해인 2011년 가을 무렵이었다. 병원 진료엔 큰 비용이 들 터, ‘아들에게 돈을 조금 더 보내는 게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 “많이 아파서 일 못하겠어요. 타슈켄트로 돌아가야겠어요.” 김씨는 올 들어 자주 공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3월 병원에 실려온 뒤 김씨는 일주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의식이 오가는 가운데 정신이 들면 고려인 간호사에게 말했다. “죽으면 유골이라도 부모님 곁으로 보내줘요.” 6월 9일 저녁 그는 타슈켄트의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위에서 인용한 손 에브게니 씨와 김 발로자 씨의 사연은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한국 땅에서 차별과 배제, 생활고를 경험한 고려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인 청년의 ‘재가 된 코리안 드림’ … 유골이 되어서도 단칸방 못 떠나”라는 제목으로 2014년 10월 2일 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는 한국에서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유 가이라만 씨의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의 한 원룸. 3평(9.9㎡) 남짓한 방 한쪽에 하얀 보자기에 싸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유가이라만(63)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왈카 눈물을 쏟았다. 상자 속에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속식을 같이해온 막내아들 유가이비탈리(25)의 유골이 들어 있었다.

비탈리는 지난 4월 한국에 왔다. 어른 세 명이 누우면 몸 뒤척이기도 힘든 단칸방에서 라만, 비탈리와 형(35) 삼부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꿨다. 우즈베키스탄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길이 막막해 한국행을 택한 비탈리는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얻고 싶었다.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고려인들이 취업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3일간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수강할 수 있는 곳은 서울뿐이다. 게다가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교육은 60명만 선착순으로 모집해 수강이 쉽지 않았다.¹⁶ 번번이 교육시기를 놓치며 초조해하던 비탈리는 지난 6월 한 고려인의 소개로 인력파견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불법이었지만, 업체의 소개로 비탈리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공장에 자리를 얻었다. 일은 고됐다.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토요일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통장에 입금된 월급은 120만 원이었다. 정상이라면 200만 원은 돼야 했다. 그나마 이 돈은 그가 한국에서 받아 본 처음이자 마지막 월급이었다. 두 달 반 동안 일했지만 인력파견업체 사장은 “나머지 월급은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사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 병원비 700만 원이 빚으로 쌓였다.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온 형은 한숨만 내쉬었다. … 지난달 22일 밤 아버지 라만이

¹⁶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취업교육 이수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법제처, 2019).

“어머니의 수술비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날 오전 5시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보겠다”며 가장 먼저 집을 나선 비탈리는 인근 고층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몸을 던졌다. 스물다섯 살 고령인 청년의 ‘코리아 드림’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 유골상자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들이 일했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고려인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국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¹⁷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3세로 2000년 처음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만료로 강제 추방되었다가 2006년 방문취업 비자로 다시 입국한 이후 한국인과 결혼해 2016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대표 겸 광주시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장 신조야 씨는 『무등일보』와 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바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올해부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2016. 1. 1).

17 정부는 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로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다. 1) 제조업, 농축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한다. 2)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기술자격능력을 취득했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이다. 정부는 또한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인 자 또는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 2)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본인명의 (또는 동거가족 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4)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자. 5)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3년 간 대표로 활동)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전용일외, 2017: 73-74).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 말 기준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는 전체 영주자격 체류 동포 7만 8,407명의 0.0005%에 불과한 359명이다(중국 동포가 7만 7,535명으로 전체의 98.9%를 차지함). 이들 고려인 동포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러시아 263명, 우즈베키스탄 87명, 카자흐스탄 6명, 키르기스스탄 3명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김경협 외, 2017: 24).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만으로 60살을 맞는 신 대표의 올해 감회는 어느 해보다 뜻깊다. 45년간 살아온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지 15년 만에 국적을 얻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었지만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풀리지 않아 영주권을 유지한 채 살아왔다. … 신 대표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은 열 명 남짓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영주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신 대표는 더욱 많은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다. … 신 대표의 꿈은 고려인들이 광주에서 고려인타운을 조성해 한국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는 “고려인들 힘으로 임대 아파트도 세워지고 학교나 병원도 생기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 광주를 고려인들의 고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일부 고려인들이 한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에 가족을 두고 떠나 온 고려인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국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정은·김경미·송석원(2015: 110)이 2015년 국내 거주 1,125명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체류자격 만료 이후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 928명 가운데 67.6%(627명)이 “귀국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2.4%(301명)에 불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중앙아시아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떠난 중앙아시아의 ‘고향’을 마음속 이상향으로 그리워하고 있다. 실례로 고려인 3세로 2012년 ‘조국’으로 ‘귀환’하여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김 블라지미르 씨는 멀리 두고 떠나 온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하고 있다(『조선일보』, “교수서 노동자 된 고려인, 시를 쓰다”, 2018. 6. 4).

김 블라지미르 씨는 고려인이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고려인마을(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살고 있다. 지난 2012년 조국(祖國)의 품에 안겼다. 광주에는 이듬해 왔다. 지난 1956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난 그는 타슈켄트 문헌대학과 의학대학에서 러시아문학 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 그가 시를 쓰고 있다. … 조국에 복종하고 싶은 그지만, 마음속은 복잡하다.

그가 태어나고 평생 살아온 중앙아시아도 가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련학교를 다녔다’ ‘러시아어로 책을 읽었다’. 그러다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졌다’ (소련연방의 해체를 말한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다. ‘누구는 자기의 역사적 조국으로, 누군 미국으로, 누군 유럽으로, 우린 한국으로.’ ‘허나 난 타슈켄트를 옛날처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나 ‘어디를 더 사랑하느냐고 내게 물어 보면 / 둘 중 하나에게는 안녕을 고해야 되는데 / 나의 두뇌는 한국에서 살라고 하는데 / 심장은 타슈켄트를 버리지 말라!고 한다.’

한편 “의병장 왕산 후손은 왜 귀화 2년 만에 조국을 떠났나”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19일 자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는 구한말 의병장으로 항일운동을 주도한 왕산(旺山) 허위 선생의 후손으로 2006년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거주하다가 2011년 키르기스스탄으로 되돌아간 허 게오르기(75) 씨의 사연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국에서 악착같이 생활해 온 허씨는 2006년 동생 허 블라디슬라브(68) 씨와 함께 주변의 도움으로 한국 국적 취득에 성공했다. 당시 왕산가 후손들의 귀화 소식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 지원 정착금이 나왔지만 석계역 인근의 반지하 집을 전세로 겨우 구할 정도였고, 한국어 구사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다. 허 게오르기 씨는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아버지 말씀에 따라 두 형제 모두 대학까지 마쳤지만 한국에 돌아가니 직장을 얻기는커녕 문화차이로 무식한 사람이 된 듯했다”며 “이해는 하지만 정부의 관심도 처음 환영할 때만 반짝였고 한국을 떠날 때쯤 우린 잊혀졌다”고 회상했다. 두 가족은 한국에서 2년을 살고 3년을 더 왔다 갔다 하다가 2011년에 키르기스스탄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이러한 허 게오르기 씨 사례는 방문취업자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조상의 나라’ 한국은, 샤프란(Safran, 1991: 83-84)이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며 강조한,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또는 돌아가야 할 진정한 이상향의

고향(true and ideal home)”이 아니라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타향(host society)”일 뿐이다.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타향 땅 한국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 고려인들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따라서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리워한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신문 기사에 표상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민족 정체성 변화와 ‘조국’과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소련의 소수민족 억압정책하에서 ‘한민족(韓民族)’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며 ‘소비에트 인민’으로 소련 사회에 동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수민족 억압정책이 완화되면서, 그리고 소련의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와 1990년 한소국교정상화 등을 계기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세와 2세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주 이후 시간이 지나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와 4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독립하면서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물론 일부 고려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

¹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일정 정도 과장되거나 편향되게 기사화된 신문 기사를 자료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정체성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신문 기사 내러티브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제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표상해 왔는지,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고려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란 대다수의 고려인 3세, 4세대들은 자신들을 ‘한민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한민족도 아니고 현지인도 아닌 고려인’, 러시아인, 또는 자신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즉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는 가운데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조국’을 찾아 ‘귀환’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조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기대하던 모습과 달리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노동자’의 고달픈 현실이다. 위에서 인용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고려인 3세 이 아르카지 씨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고려인을]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있으며, 이들을 ‘한민족’으로 포용하기보다는 “약간 우리 말을 이해하는 외국인노동자”로 취급하고 있다(『서울신문』, “언론인 김호준이 본 유라시아의 들꽃, 고려인의 파노라마(하): 조국에 발들 던고”, 2015. 9. 9).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능숙지 못해 발생하는 언어 장벽과 외국국적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다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다 보니 거주환경과 생활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한국 땅에서 차별과 배제, 생활고를 경험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일부 한국 정착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위의 손 에브게니 씨, 김 발로자 씨, 유 가이라만 씨의 사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마음속의 ‘고향’으로 그리워한다. 김 블라지미르 씨가 시로 표현한 바와 같이 “나의 두뇌는 한국에서 살라고 하는데/심장은 타쉬켄트를 버리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는 디아스포라 정치를 이해하는데, 특히 디아스포라 개념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 연구의 대표적 연구로 평가받는 샤프란(1991)의 연구 이래 디아스포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상당수는 디아스포라의 ‘가치와 정체성, 충성심의 원천’으로 ‘고향’의 의미를 강조한다(Brubaker, 2005: 5). 이들 연구에 의하면 ‘고향’은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목적론적 이상향’이며 디아스포라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연대 의식

을 규정하는 근본 원천이다.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타향 땅(host society)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조상의 고향(ancestral homeland)을 자신 또는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또는 돌아가야 할 진정한 이상향의 고향”으로 간주한다(Safran, 1991: 83-84).

위에서 살펴본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는 이처럼 디아스포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향'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고향'으로 간주해온 역사적 '조국'과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출신국 또는 현재 거주하는 거주국 등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리고 디아스포라 구성원 개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하는 역사적 '상상'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고향' 또는 '조국'의 의미는 개인마다 또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으나 거칠게 말하자면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한반도와 연해주에서 소련으로,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소련에서 다시 한반도로,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와 독립국가연합 출범 이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조국'을 찾아 국내로 '귀환'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고향'은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가족들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원천인 '고향'과 '조국'의 의미가 이주와 재이주, 귀환의 과정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고일: 2019년 6월 3일 | 심사일: 2019년 7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496&ancYd=19990902&ancNo=06015&efYd=199912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검색일: 2019. 7.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b.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582&efYd=20190702#0000>(검색일: 2019. 7. 18).
- 국립국어원. 2019.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검색일: 2019. 3. 4).
-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 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33-60.
- 김경협 외. 2017. 『고려인동포 체류 불안 사례 보고회 및 고려인동포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서울: 김경협의원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gh000&logNo=22106027528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검색일: 2019. 7. 18).
- 명드미뜨리. 2007. “중앙아시아의 한인사회.” 『민족연구』 29권, 198-207.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007. 『방문취업제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8JT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lMkY0ODc0MDYlMkZhcncRjBFZpZXc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lM0RmYWxzZSUyNnBhZ2UlM0QyJTl2YmJzT3BlblldyZFNlcSUzRCUyNnNyY2hDb2x1bW4lM0QlMjZzcmNoV3JkJTNEJTI2>(검색일: 2019. 7. 19).
- 법제처. 2019.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취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3&cnpClsNo=1>(검색일: 2019. 3. 4).
- 신명직. 2014. “다(多)공화국 국민에서 ‘다(多)국가 시민’으로: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의 해체와 고려인.” 『석당논총』 59권, 65-109.
- 오정은·김경미·송석원. 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 현황 조사 II』. 서울: 재외동포재단.
- 이광규. 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 이원봉. 2001. “중앙아시아 고려인 강제이주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8권 1호, 75-104.
- 이원용. 2011.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의 원인 및 과정.” 『유럽사회문화』 7호, 149-199.

- 이채문·박규택. 200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권 4호, 559-575.
- 임채완·선봉규·이소영. 2014.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신욱. 2007.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권 3호, 77-107.
- 전용일·고선운·이민영·손동희. 2017. 『재외동포의 장기적 활용 및 통합제고 방안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도 연구보고서. 서울: 법무부.
- 최한우. 2000.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과 고려인 집단 정체성 문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권 1호, 182-220.
- 황영삼. 2016. “구소련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구조적 특징.” 『민족연구』 68권, 162-197.
- Brubaker, Rogers. 2005.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1-19.
- Cohen, Robin. 2008.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2nd ed. London: Routledge.
- Conway, Dennis, and Robert B. Potter, eds. 2016. *Return Migration of the Next Generations: 21st Century Transnational Mobility*. New York: Routledge.
- Fehler, Benedicte Ohrt. 2011. “(Re)constructing Roots: Genetics and the ‘Return’ of African Americans to Ghana.” *Mobilities* 6(4), 585-600.
- Fox, Jon. 2009. “From National Inclusion to Economic Exclusion: Transylvanian Hungarian Ethnic Return Migration to Hungary.” In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186-20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dberg, Charlotta.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to Sweden: The Dividing Line of Language.” In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159-18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ss, Christin. 2008. “What Are ‘Reverse Diasporas’ and How Are We to Understand Them?”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7(3), 288-315.
- Iglicka, Krystyna. 1998. “Are They Fellow Country-Men or Not? The Migration of Ethnic Poles from Kazakhstan to Polan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4), 995-1014.
- King, Russell. 1979. “Return Migration: a Review of Some Case Studies from

- Southern Europe.” *Mediterranean Studies* 1(2), 3–30.
- King, Russell, and Anastasia Christou. 2011. “Of Counter-Diaspora and Reverse Transnationalism: Return Mobilities to and from the Ancestral Homeland.” *Mobilities* 6(4), 451-466.
- Laitin, David D. 1998.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Ortloff, Debora Hinderliter, and Christopher J. Frey. 2007. “Blood Relatives: Language, Immigration, and Education of Ethnic Returnees in Germany and Japan.”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1(4), 447-470.
- Safran, William. 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83–99.
- Safran, William. 2005. “The Jewish Diaspora in a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 *Israel Studies* 10(1), 36-60.
- Song, Changzoo. 2009. “Brothers Only in Name: The Alienation and Identity Transformation of Korean Chinese Return Migrants in South Korea.” In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281-30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kenaka, Ayumi. 2009. “Ethnic Hierarchy and Its Impact on Ethnic Ident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uvian and Brazilian Return-Migrants in Japan.” In *Diasporic Homecomings: Ethnic Return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ited by Takeyuki Tsuda, 321-34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suda, Takeyuki. 2003. *Strangers in the Ethnic Homeland: Japanese Brazilian Return Migration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outira, Eftihia A. 2006. “Post-Soviet Diaspora Politics: The Case of the Soviet Greeks.” *Journal of Modern Greek Studies* 24(2), 379-414.
- Wikipedia. 2019. “Diaspora.” <https://en.wikipedia.org/wiki/Diaspora>(검색일: 2019. 1. 19).
- Yoon, In-Jin. 2012. “Migration and the Korean Diaspora: A Comparative Description of Five Cas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3), 413-435.

Abstract

Where Is My “Homeland”? Diaspora Politics of *Koryŏin* of Central Asia

Bum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a perspective of diaspora politic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processes of “reverse diaspora” of *Koryŏin* (descendants of those Korean who were forcefully migrated from the Maritime Provinces of the Far East to Central Asia in 1937) who remigrate from Central Asia to their historical “homeland,” South Korea, in the 2000s and 2010s. Specifically, by using newspaper articles from January 1, 1981 to July 20,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diaspora identity of *Koryŏin* in the 1980s, 1990s, and 2000s, and shows that, after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South Korea, *Koryŏin* of Central Asia have come to recognize as their “true homeland”, Uzbekistan, Kazakhstan, and other states of Central Asia in which they were born and grown up, and to form a “reverse diaspora” in their historical “homela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homeland”, which functions as a source of diaspora identity, is continuously changing in the processes of migration and remigration .

Keywords | *Koryŏin* of Central Asia, Remigration, Reverse Diaspora, Diaspora Politics, Identity

